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법률 고찰

소유진^{1)*} · 이다희^{1)*} · 정혜인²⁾ · 김경한^{3)**}

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

²⁾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³⁾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Yu Jin So^{1)*}, Da Hee Lee^{1)*}, Hye In Jeong²⁾, Kyeong Han Kim^{3)**}

¹⁾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reassess the scope of practice for medical personnel based on laws.

Method : The law specify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medical personnel has been selected searchi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https://www.law.gov.kr>). The result was categorized as 'examination, diagnosis, treatment, procedure, prescription, and others'.

Results : The laws related to medical procedure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iagnosis, treatments, and public health and others. In the field of diagnosi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re generally allowed to play a role. However, some laws specify that only medical doctors can be the primary authorities for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area of treatments, particularly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only medical doctors or nurses are typically mentioned. There are debate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other areas concerning issues such as vaccination, disability diagnosis, and the qualifications for health center directors. A reevaluation is also needed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ere only medical doctors are set as the personnel standard for workers' health examinations.

Conclusion :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citizens, there is a need for a clear definition of the licensure and scope of pract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conflicting provisions among various laws and clear criteria for the term 'physician' in legal contexts are essential.

Key words : Scope of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law

• 접수 : 2023년 11월 27일 • 수정접수 : 2023년 12월 6일 • 채택 : 2023년 12월 20일

*공동 1저자

**교신저자 : 김경한,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63-290-9031, 팩스 : 063-291-1240, 전자우편 : solip922@hanmail.net

I. 서론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¹⁾ 하지만 의료법상에는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종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²⁾, 사법부의 판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³⁾

특히 의사와 한의사는 인체 전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여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구가 많다. 최근 사회·경제, 과학·기술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대한 개발 및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는 개별 기술, 기기, 의약품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⁴⁾을 통해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되고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새로운 판결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적용, 응용하는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서양 의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도입되었더라도 전반적인 사용 취지에 한의학적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를 한의사의 면허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물은 의사만의 독점영역이 아니라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초음파 진단기나 뇌파계 등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박 등이 실시한 유사 연구에서는 한의사에게 감염병 환자의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진단할 때는 의사만 가능하게 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의료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⁵⁾. 이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롭게 제시됨에 따라 연구진은 의료 관련 법률의 타당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4년에 수행된 박 등의 연구에서의 법률상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비교 고찰⁵⁾을 현행 법에 대입하여 2023년 현재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제시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법령상 의료인 업무 범위의 모호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II. 방법

2023년 3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상에 제시된 현행 법률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료인”과 “의사”의 검색어로 검색을 진행하였고, 검색결과 중 의료인의 업무범위가 포함된 법률만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50개의 법률이 선정(Table 1)되었고, 50개의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의료인’과 ‘의사’의 검색어로 재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에서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별도로 도출하였다.

해당된 항목은 그 성격에 따라서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문⁶⁾’에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로 정의한 것에 근거하여 연구자 내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분류된 법령은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의료인별 권한, 비교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특히 의료인별 권한은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III. 결과

1. 진단과 검사

진단과 검사 영역에서는 진단서, 감염병·치매·정신질환·산업재해에 대한 진단, 장애 진단, 뇌사 판정, 결격사유 진단, 의료기기 사용으로 세부 구분하였다.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

Table 1.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practice for medical personnel

구분		법률
보건·의사	행정조직·통칙	지역보건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암관리법, 검역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의사·혈액관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치매관리법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	약사	약사법
	마약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학술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체육·청소년육성	국민체육진흥법
군사	군법·군사법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인·군무원인사	군인사법
형사법	교정·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년법
노동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보훈	국가보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병무	병무	병역법
해운	선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민방위·소방	소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원자력	원자력안전법
육운·항공·관광	항공	항공법

역법에서는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에서는 의사만을 감염병 진단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의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질환, 산업재해, 장애 진단, 뇌사 판정, 결격사유 진단은 대부분 영역에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만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의료기사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시술과 처치

시술과 처치 영역에서는 응급, 의료 처치의 지시로 분류하였다.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구급활동 등은 법률상에 의사만 제시하고 있다.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료 처치 지시 영역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하는 행위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가능하다. 치료가 필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의사만 제시되어 있다.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지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diagnosis

영역	법령명	주요 조문 내용	의료인					
			한의사 (일반)	한의사 (전문)	의사 (일반)	의사 (전문)	치과의사	간호사
진단서 교부	의료법 제17조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	○	○	○	○	-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	○	○	○	○	-	-
	의료법 제17조의 2	처방전 작성과 교부	○	○	○	○	○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단	○	○	○	○	○	-
	검역법 제2조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	○	○	○	○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진단	-	-	○	○	-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진단	-	-	○	○	-	-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의 진단 및 검안	○	○	○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	식중독환자나 의심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 채취 및 보관	○	○	○	○	-	-
	결핵예방법 제8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결핵환자의 진단 및 사체검안, 사망의 신고	○	○	○	○	○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결핵의 전염성 소실 판정	-	-	○	○	-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	결핵의 완치 판정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진단 및 사체 검안의 신고	-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검사	-	-	○	○	-	-
치매	치매관리법 제2조	치매 진단	○	○	○	○	-	-
정신질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신질환 의심자의 진료	-	-	-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	-	-	-	○	-	-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관한 법률 제40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진료	-	-	-	○	-	-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	군수용자의 징벌 전 진료	-	-	○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보호소년의 약물 오·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진료	-	-	-	○	-	-
	소년법 제12조	소년부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진단	-	-	-	○	-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을 위한 진단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직업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필요성에 대한 판정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근로금지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제시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부분휴업급여 신청에 관한 소견서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상병보상연금 신청에 관한 소견서	-	-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	부상·질병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	○	○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9조,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	-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작업전환 등에 대한 소견서	-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8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	-	-	○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진료	-	-	○	○	-	-
	보훈 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시 질병의 증명을 위한 진단서	-	-	○	○	-	-
	장애진단	국민연금법 제120조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의 장애등급판정	-	-	○	○	-	-
	뇌사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	-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	-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	뇌사조사서 작성	-	-	○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 의사의 자격	-	-	-	○	-	-
	결격사유 진단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양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의약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의약품 수입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	-	-	○	○	-	-
의료 기기 사용	의료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의료기사 지휘권	-	-	○	○	○	-
	의료 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취급자 자격	○	○	○	○	○	-
		의료기기법 제24조	의료기기 관련 광고 금지	○	○	○	○	○	-
		의료기기법 제3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작성·보존	○	○	○	○	○	-

Table 3.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treatments

영역	법령명	주요 조문 내용	의료인					
			한 의 사 (일 반)	한 의 사 (전 문 의)	의 사 (일 반)	의 사 (전 문 의)	치 과 의 사	간 호 사
응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료지도	-	-	○	○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자격	-	-	○	○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응급처치의 지도 및 구급활동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지시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지시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예외	-	-	○	○	-	○
의료 처치 지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의 지도를 위한 지도의사의 자격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	○	○	○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적 처우에 대한 지시	-	-	○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3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지시	-	-	-	○	-	-

3. 보건과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

보건과 기타 영역에서는 감염병 관리, 보건복지, 병역 및 군인사법, 의료 관련 자문, 의약품, 제대혈 및 혈액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해부로 분류하였다.

한의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은 의사를 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의사의 업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 보건에서도 공중보건조사,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등의 자격이 있지만 보건소장은 의사만을 우선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한의사는 산업보건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력 관련 면허 취득에서도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에 한정하여 일부 필기시험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노인의 장기 요양 등급판정이나 방문간호 지시 등은 모두 한의사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급 심사가 불가능하다. 병역 영역에서도 한의사는 의무장교, 공중보건조사, 전문연구요원, 의무장교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의료 관련 자문의 경우 한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신의료기술 평가·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

해서는 자문이 가능하나, 수용자·정신질환자·치료감호시설·학교에서의 응급처치·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이 어렵다. 한의사는 약물 역학조사관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제조 관리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 의무 인력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IV. 고 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⁴⁾에서는 첫째, 관련 법령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서양 의학적 기술이나 지식이 도입되었더라도 전반적인 취지에 한의학적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를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초음파 진단 기기의 안전성과 한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영상의학 실무교육,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⁷⁾ 이는 대법원에서 기존에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틀에서

Table 4. 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in public health and others

영역	법령명	핵심적인 조문 내용	의료인						
			한 의 사 (일 반)	한 의 사 (전 문 의)	의 사 (일 반)	의 사 (전 문 의)	치 과 의 사	간 호 사	
감염병 관리	예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	-	-	○	○	-	-
		검역법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예방위원의 자격	○	○	○	○	-	○
	감염병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감염병 발생의 신고	○	○	○	○	○	-
	감염병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해부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오염 장소의 소독지시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중 필수인력의 자격	-	-	○	○	-	-
	식중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	○	○	-	-
결핵 관리	결핵예방법 제18조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 지급	-	-	○	○	-	-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	○	-	○	
보건 복지	모자 보건	모자보건법 제10조	모자보건전문가의 자격	○	○	○	○	-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	-	-	○	○	-	-
	지역 보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공중보건역사의 정의	○	○	○	○	○	-
		지역보건법 제18조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한 보건소 시설의 이용	○	○	○	○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	○	○	○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의 자격	-	-	○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자격	○	○	○	○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	○	○	○	○	○	○
	학교 보건	학교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23조	학교의사의 자격	○	○	○	○	○	-
		학교보건법 제14조의2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	○	○	○
	산업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역사의 자격 요건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정보 제공 요구	-	-	○	○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1조	일부 필기시험 과목의 면제	-	-	○	○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7조		실험과 검사를 위한 시설의 이용	○	○	○	○	○	-	
노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시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문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	○	○	○	○	○	
		등급판정위원회의 필수 구성 위원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필수 구성 위원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자격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소견서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방문간호의 지시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	○	○	-	-
장애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	-	-	○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활동지원등급 변경에 대한 소견서	-	-	○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방문간호의 지시	○	○	○	○	○	-
병역 및 군인사법		군인사법 제12조	의무장교의 자격	○	○	○	○	○	-
	병역법 제2조		공중보건학의사의 자격	○	○	○	○	○	-
			병역판정검사전문학사의 자격	-	-	○	○	○	-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	○	○	○	○	○	-
	병역법 제58조	의무장교의 병적 편입	○	○	○	○	○	-	
의료관련 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	○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수용자의 자비(自費)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	-	-	○	○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수용자의 자비(自費)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의사의 자격	○	○	○	○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	○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	자문의사의 자격	○	○	○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14조		감정위원의 자격	○	○	-	○	○	-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의 자격	○	○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응급입원 동의	-	-	○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투약 상태 및 관리와 특이 증상 대처에 대한 자문	-	-	-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대한 의견	-	-	-	○	-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학교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자문	-	-	○	○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항공전문학사의 자격	-	-	○	○	-	-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의약품 제조업무 관리자 자격	-	-	○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4조의2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	○	○	○	○	-
		약사법 제37조의3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광고금지	-	-	○	○	○	-
제대혈 및 혈액관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혈의 채취 감독	-	-	○	○	-	-
			의사의 감독 하에 제대혈의 채취	○	○	○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책임자 자격	-	-	○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의 적격여부 검사 지도	-	-	○	○	-	-
	혈액관리법 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	-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호스피스 시행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 의무	○	○	○	○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소견서	-	-	○	○	-	-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해부	○	○	○	○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의 해부	-	-	○	○	○	-
기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의 건강상태 확인	-	-	○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징계 중인 보호소년 등에 대한 건강진단	-	-	○	○	-	○
	의료법 제26조	변사체 신고	○	○	○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수행방법의 지도 및 관리 의뢰	○	○	○	○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	-	○	○	○	○

벗어나 보다 폭넓게 한방의료행위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도 전체 현행법상 연관 법령을 고찰한 결과 여전히 법률상에서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마다 일관성이 없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 문제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체 법령 가운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 여섯 가지 즉, 감염병 진단 및 관리, 응급의료행위, 예방접종 시술 자격, 장애인 등급 진단 자격, 보건소장 자격 요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인력 기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판례들을 근거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 진단에 대해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한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에서는 의사만을 감염병 진단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의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⁴⁾에서 진단 영역에 한정하여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가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사례(2022구합63317)⁸⁾가 있어 질환의 진단 영역에서의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하다고 법원에서는 판결하는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대한 진단 및 후속 조치

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상의 감염병 진단 주체로 ‘의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한의사가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률과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상의 ‘의사’의 표현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

둘째, 응급의료 관련된 영역에서 일부 역할에 대해 의사 또는 간호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응급의료 시에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 심폐소생술 외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8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봉침을 시술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자, 주변 가정의학과에 협진 요청을 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에 이르렀다.⁹⁾ 유사한 사례로 2014년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아나필락시스 증상 때문에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인하여 2018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보건교사는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응급의료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응급처치까지의 소요 시간이 주요한 변수이므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필

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시술자 면허 범위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위탁기관이 의사 근무 기관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법률에서는 의사의 면허 범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률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아닌 비급여 등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면허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제 2019년 소아 청소년 의사회가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치과 의료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예방접종이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치과 의사협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을 제외한 본인 부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자체 결정에 따라서 가능하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2023년 법원은 2심에서 치과 의사의 예방접종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¹¹⁾ 국가 필수 사업을 특정 직역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해 주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의 참여를 거부하였고¹²⁾,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¹³⁾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 의료종사 직군이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유럽의 예방접종 체계 관련 보고서¹⁴⁾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에게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면허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간호사와 약사에 의해서도 완전히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모두 감염병을 진단하고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졌지만,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중재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넷째, 한의사의 장애 진단서 발급 권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 진단의 의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는 주체로 의사 전문의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한의사가 장애 정도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 또한 지체 장애와 같은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⁴⁾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 또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장애 정도를 진단하는 주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기준 의사가 보건소장을 담당하는 비율은 41% 수준이며,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의사가 보건소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다양한 보건 의료 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다.¹⁵⁾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건강 증진 등의 ‘보건학적 지식’과 ‘지역 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과 지역 보건사업을 기획·실천하기 위한 ‘지도력’이 필요한 점, 보건소장 외 의료업무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의사 출신이 아닌 사람의 임명도 가능한 점 등을 거론하며,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아닌 점을 명시한 판결을 한 바 있다.¹⁶⁾ 보건소는 2000년 이후 의료 서비스 중심에서 현재 건강증진 중심으로 역할을 개편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 협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특정 영역의 면허권자에게 우선해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 환경 등에 따라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검사 항목은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AST(SGOT) 및 ALT(SGPT), γ -GTP 및 총콜레스테롤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을 신청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고, 특히 인력 기준에 의사가 필수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건강진단의 주체를 의사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⁴⁾ 취지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일반건강진단의 인력 기준에서 의사만을 제시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겠다. 산업재해에서도 한의사도 부상이나 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 금지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권한에 대해서는 한 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0조에 따르면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경우는 전염 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 및 마비성 치매, 심·신·폐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는 의사 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의사 해당 부분에 대한 진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에 의사만 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전체 법률상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고찰하여 법률의 일관성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에 대한 기준으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21314)⁴⁾을 제시함으로써 더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 영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각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영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각 법률에서 상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며, 법률상 '의사'의 표현이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을 바탕으로 해석이 필요하겠다.

V. 결론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상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제안된 기준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각 의료인의 업무 범

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진단과 검사 영역에서 한의사가 대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 감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 증 등에 대한 진단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시술과 처치 영역에서는 응급의료 관련 일부 역할에 대해서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한의사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면허된 범위 이외의 조치가 불가하다.

보건과 기타 영역에서는 한의사에 대해 예방접종 시술 자격, 장애인 등급 진단 자격, 보건소장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 및 예방, 관리 권한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에게 부여되었으나 감염병 관리의 필수적 중재인 예방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장애 진단에서도 의사 전문의로 직권을 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수행하고 있으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 또한 의사만을 인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금지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도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업무 범위가 실제적 업무 수행과 충돌하거나 법률 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 의료인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의료법 제1장제2조
2. KW Jung, The Standard and Limit of Medical Practice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2018;19 (2): 3-24
3. Eun Joo Shin, A Case Study on the Use of Ultrasonic Medical Device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23; 31(1): 7-34
4.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5. YL Park, YS Kang, KH Baek, SH Ra, Study

-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4;18(3): 91-104
6.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7. HY CHOI.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2023;24(1): 131-155
 8.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2구합63317 판결
 9.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6. 9. 선고 2020나 11351 판결
 10.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1항
 11. 수원지법 2021. 02. 21. 2020고정388 판결
 12. 최선 (2015, 05, 21). “아쉬운 건 정부” 의사협회, 독감 사업 참여 거부 촉각. <MedicalTimes>. URL: <https://www.medicaltimes.com/News/1097246?ID=109723310>
 13. 광성순 (2021, 02, 24). 복지부 “의협, 예방접종 거부 없을 것으로 생각”. <청년의사>. URL: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047>
 14. WHO. The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vaccination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2018
 15. ST Kim.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Public Health,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2;13(2):1343-1354. 10.22143/HSS21.13.2.95.
 16. 국가인권위원회(2017. 05. 17),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1090>.